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청년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현재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는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상위 법령에 비추어 이를 ‘청년인재정보’로 수정하고자 합니다.

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관련 법률 인용 조문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.

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인용조문 개정 등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